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1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	2
2. 조항별 검토	6
(1)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	6
(2)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임원	10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임원	14
(4)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6.
3. 회부연월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개정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임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등 4개 법률에 따른 임원 및 전문자격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피한정후견인”은 「민법」¹⁾상 성년후견제도의 일환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에 따라 일정 범위의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람임.

종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행위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구분하고 대상자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1)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탈·제한하여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²⁾은 이를 성년후견 제도로 대체하여 행위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명칭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박탈·제한해야 할 행위능력을 가정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행위능력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 비교]

금치산·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제도
<금치산자>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 취소 가능	<피성년후견인>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의 예외 존재)
<한정치산자>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u>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u>	<피한정후견인>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u>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u>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민법」 개정에 따라 개별법상 결격조항들이 대부분 기존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일괄 대체하면서 피한정후견인의 자격이 일률적으로 박탈되었기에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결격조항에 일괄 규정되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정비를 시도하는 것은 취지상 타당하다고 생각됨.

2)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다만, 개별법상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할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대상 직위의 중요성 및 주요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위능력이 일부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상 직위 취득에 사전·사후 절차가 있어 지원자의 행위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거나 사후조치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대상 직위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 위원회 추천·심의 등 별도의 사전절차가 있거나, 대상자가 직위를 취득한 후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취소 또는 해임·해촉할 수 있다면 결격조항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시켜 직위 취득을 일괄 제한할 필요가 적을 것임.

또한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³⁾은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①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②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③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④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임.

3)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이하에서는 상기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별·조항별로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겠음.

2. 조항별 검토

(1)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

개정안은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⁵⁾ 임원의 결격 사유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 ----- ----- -----.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18. (생략)	2.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다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
 1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에게 제1항(제12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 5)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에서 제21조제1항을 준용하고 있음.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내 자금 조성,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지역사회 개발 등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임원인 이사장·이사·감사와 중앙회 임원인 회장·이사·감사위원은 각 기관의 경영상 주요 결정 및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국가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겠음.

또한 임원 선임의 사전·사후 절차를 살펴보면,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 사유 외에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회원 투표 또는 총회·대의원회 투표를 거쳐 선출⁶⁾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투표는 행위능력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아니며, 현행법상으로는 행위능력 부족이 사후적으로 드러나도 신속하게 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임⁷⁾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결격

6)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⑨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 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상근이사는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7) 「새마을금고법」

제19조(임원과 직원) 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참고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 임원은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음.

「국민연금법」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이하 3개 법률의 결격조항 정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 결격조항 정비에 대해서는 금고의 재무건전성 및 국민의 신뢰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개정안⁹⁾이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그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겠음.¹⁰⁾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4. 기금이사가 제31조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9) 의안번호 2202918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2024.8.16.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029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2024.8.16. 김도읍의원 등 11인)」
- 10) 참고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임원의 경우에도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상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제안되지 않은 상황임.

(2)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임원

현행 「전자정부법」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의 결격사유로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¹¹⁾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생략) ②·③ (생략)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① - ----- ----- ----- -----. 1. <u>피성년후견인</u>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시스템 감리란 발주자 및 피감리인으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행위¹²⁾이며, 감리법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등에 부과된 정보시스템 감리

11) 「전자정부법」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6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 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¹³⁾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전자정부의 효과적 구축을 통한 행정효율성·투명성 제고에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한다 하겠음.

그러나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은 민간 IT기업으로서 임원 1인의 행위 능력보다는 법인 전체의 기술·재정능력에 의해 업무수행 역량이 좌우되는 편이며, 이에 현행법 및 시행령도 감리법인의 등록요건으로 최소 감리원 수와 자본금 규모를 규정¹⁴⁾하여 관리하고 있음. 또한 법인이 동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¹⁵⁾ 감리법인의

13)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전자정부법」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①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감리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감리원 5명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1명 이상은 같은 표에 따른 수석감리원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제1항제1호의 감리원은 그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제74조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수석 감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
감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15)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기술·재정능력을 사후적으로도 관리하고 있음.

이렇듯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기술·재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사후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법인 등록의 결격사유에 임원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를 명시하여 이를 일괄 배제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도 같은 이유로 동 개정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유사 입법례로 국회는 2020년 4월 29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였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모두 삭제¹⁶⁾ 하였고, 2020년 5월 20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¹⁷⁾ 하였으며, 2020년 12월 9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¹⁸⁾ 하였음.

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6) 「해외이주법」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2. 삭제 <2020. 5. 26.>

17)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8) 「경비업법」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민간 법인 임원 결격사유 삭제 사례]

의결일	근거법률	대상 직위	삭제 결격사유
2020.4.29	「해외이주법」	해외이주알선업 법인 임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020.5.20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 임원	피한정후견인
2020.12.9	「경비업법」	경비업 법인 임원	피한정후견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임원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 ----- -----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전반을 총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준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임원 중 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등이 임명하며¹⁹⁾,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

특히 같은 법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준으로서 학식·경험·능력 등을 명시하여 임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²⁰⁾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임원이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장이 이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¹⁾

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어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어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

이렇듯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임원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사후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그 결격사유에 피한정 후견인을 명시하여 일괄 배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도 같은 이유로 동 개정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유사 입법례로 국회는 2020년 4월 29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²²⁾ 및 舊재외동포재단²³⁾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삭제하였고, 2020년 5월 20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3) 「법률 제17308호 재외동포재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모두 삭제²⁴⁾하였으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하여 정부법무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²⁵⁾한 사례가 있음.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 삭제 사례]

의결일	근거법률	대상 직위	삭제 결격사유
2020.4.2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피한정후견인
	「舊재외동포재단법」	舊재외동포재단 임원	피한정후견인
2020.5.2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 임원	피한정후견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5) 「정부법무공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4)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개정안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7. (생략)	제6조(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u> 2. ~ 7.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상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인허가 신청 등 대리, 행정 관련 상담·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²⁶⁾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전문성·공익성이 모두 요구된다 하겠음.

그러나 행정사는 2차에 걸친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²⁷⁾하고

26)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27) 「행정사법」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업무 시작 후에도 주기적으로 연수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등²⁸⁾ 역량을 검증·유지하는 사전·사후 절차가 구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자격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명시하여 이를 일괄 배제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1. 제1차시험(3과목)

가.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한다)

2. 제2차시험(4과목)

일반행정사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한다)
해사행정사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해당 외국어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및 해사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나.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나. 해당 외국어

28)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시기·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도 같은 이유로 동 개정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유사 입법례로 국회는 2020년 5월 20일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변호사시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²⁹⁾하였고, 2020년 11월 19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문화예술교육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³⁰⁾하였으며, 2020년 12월 9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국가공무원,³¹⁾ 지방공무원,³²⁾ 소방안전교육사³³⁾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고, 2021년 3월 24일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가맹거래사,³⁴⁾ 공인회계사³⁵⁾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음.

29)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3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3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32)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33) 「소방기본법」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가맹거래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5)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전문자격사·공무원 등 결격사유 삭제 사례]

의결일	근거법률	대상 자격·공무원	삭제 결격사유
2020.5.20	「변호사시험법」	변호사	피한정후견인
2020.11.1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사	피한정후견인
2020.12.9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피한정후견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피한정후견인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교육사	피한정후견인
2021.3.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거래사	피한정후견인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피한정후견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 의 처

02)6788-5333